

마이크로폰이나 카메라를 사용해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

라이프(Life)잡지의 기자들의 침입행위가 사생활침해에 대한 유죄가 되어 1,000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했다. 비록 에이·에이·디터맨 대타임(A. A. Dietermann v. Time)의 사례가 작은 규모의 배상금판결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63년 11월 1일자 라이프지는 『엔터리 치료 엄중단속』이란 기사에서 디터맨씨의 사진 두 장과 함께 그를 돌팔이 의사로 묘사했다. 라이프지는 그 보도를 하기에 앞서 로스엔젤레스 지방검사의 동의를 얻었다. 「라이프지는 증거에 사용할 두 장의 사진과 정보를 얻은 후에 그것을 공표해도 좋다」는 동의를 얻었다. 이런 동의가 있는 후에 라이프지의 두 기자인 윌리엄·레이(William Ray)씨와 잭키·매트칼프(Jackie Metcalf)부인은 디터맨씨의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디터맨씨 집마당 앞에 있는 잠긴 대문의 밀을 눌렀다. 그리고 기자들이 그의 허락을 받기 위한 책략으로 그의 친구중의 한 사람이 그들을 보냈다는 말을 하자, 디터맨씨가 그들을 집안으로 안내했다. 그 기자들이 안내된 그의 사실에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매트칼프 기자는 그에게 그녀의 가슴속에 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말했다. 날품팔이 연관공인 디터맨씨는 그녀를 진찰했다. 진찰받는 동안에 라이프지의 직원인 레이씨가 그의 인지나 동의없이 부정확한 방법으로 그 「진찰」을 촬영했다. 그 다음에 라이프지는 이들 사진 중에 하나를 공표했는데, 그것은 그녀의 가슴 윗부분에 왼쪽 손을 올려놓고 있는 디터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사진은 그가 어떤 도구를 보고 있고, 그의 오른손에 막대기 같은 것으로 보이는 것을 들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진단 후에 디터맨씨는 매트칼프 부인의 고통이 11년 9개월 7일되는 썩은 버터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녀는 그의 사실에서 좀 더 오래 있었다. 그의 지갑에는 그의 집근처에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 속에 그녀와 그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장치된 녹음기와 연결된 송파기가 들어 있었다. 녹음기를 장치한 자동차 안에는 라이프지의 기자인 조생 브레이드씨, 지방검사실의 사무원인 존·마이너씨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의 조사원인고핀트·렉크씨가 있었다. 비록 녹음된 대화가 라이프지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브레이드는 디터맨씨 집으로부터 추신되는 수신기에서 메모를 했다. 이러한 탐정의 결과에 따라서, 디터맨씨는 무면허 의료 행위혐의로 그의 집에서 체포되었다. 디터맨씨는 광고를 하지 않았고, 그가 병이 없다고 진만했을 때나 약초나 광물로 처방했을 때 돈을 받지 않았다. 그는 기부금을 받았다. 상상되는 바와 같이, 디터맨씨는 유쾌하지 않았다. 그는 10만 달러의 일반적 손해배상금(general damages)과 20만 달러의 징계적 손해배상금(exemplary damages)을 청구하면서 라이프지를 사생활침해로 고소했다. 그 잡지사의 직원들은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으며, 본인의 인지나 동의없이 그의 사진을 찍고 녹음기와 진파 송신기를 사용해서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법정은 이러한

상황이 결과적으로 디터맨씨의 사생활을 침해한 잡지에 대한 소송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지지했다. 재판관은 디터맨씨에게 단지 1,000 달러의 일반적 손해배상금만을 재정했고, 징계적 손해배상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지방재판관인 찰스·H·카(Charles H· Carr)는 비록 디터맨씨가 그의 감정과 평안한 마음에 상처를 받은 데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정신적인 것이어서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카 재판관은 그가 라이프지의 이 같은 행위를 언론에 대한 가장 호의적인 측면에서 다루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이례적인 면은, 징계적 손해배상금의 제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속기 쉬운 사람들에게 커다란 손해를 유발시키는 사악한 엉터리치료의 제거에 피고의 노력이 기울여졌다는 사실이 간과될 수 없다. 나아가서 이 판결이 법을 정확하게 해석했다면, 출판업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앞으로 이 지표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 잡지의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시도으로써, 변호사들은 수정헌법 제 1 조에서 그들의 피난처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라이프잡지에 대한 판결을 지지하면서, 순계재판관인 슈레이·허프스테드러(Shirley Hufstедler) 여사는 이 변호사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피고는 그의 직원들이 뉴스를 취재하고 있었고 그들이 사용한 기구들은 「조사취재에 필요불가결한 도구들」 이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 1 조가 은폐된 카메라와 전자장치들을 지니고 피고의 사실을 침입한 책임을 면제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허프스테드러판사가 무시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때는 프라이버시법과 기자의 윤리에 관한 교훈을 전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우리는 뉴스취재가 뉴스전파의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라는데 동의한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은폐된 기계장치들이 뉴스취재의 「필요불가결한 도구」 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조사보도는 고전적 기술이다. 조사보도의 성공적인 실행은 오랫동안 소형카메라와 전자장치들의 발명을 능가하고 있다. 수정헌법 제 1 조는 뉴스취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나 범죄로부터 뉴스맨의 면제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결코 해석될 수 없다. 수정헌법 제 1 조는 전자장치로 다른 사람의 가정이나 사무실을 침해하거나, 훔치거나, 침입하기 위한 특허장이 아니다. 침입한 사람은 범죄혐의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무턱대고 특허장이 될 수 없다.』 허프스테드러판사는 소송가능성이 있는 사생활침해가 라이프잡지의 직원들에 의해서 수행된 탐방과정에서 발생되었고, 공표는 원고인 디터맨씨의 소송원인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말했다. 나아가서, 그 판사는 그 잡지가 이야기를 공표함으로써 사생활침해에 관한 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고 부언했다. 그런데 그녀는 침입이 그 이야기를 얻어내는데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수정헌법 제 1 조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은 부적절하게 얻은 정보를 나중에 공표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침입에 대한 행위가 불리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입은 부가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정하게 얻어진 재료가 대중에게 공급될 때, 침입행위를 위협한다. 그것은 수정헌법 제 1 조에 의해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지는 않는다.」 (1971 년)